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2021. 7



**국 토 교 통 부
의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빛그린 산단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및 초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방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 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하남산단 간 연계도로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교통편의 제공
- 진입도로 신설로 기존 국도22호선 교통혼잡 구간(선운교차로, 운수IC등) 교통량 분산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공사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7조 제2항[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에 따라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근거내용	마. 도로의 건설 2) 「도로법」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20.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 2020.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결정내용 공개
- 2020.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 2020.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공람기간 : 2020.10.21 ~ 2020.11.17
- 2020. 10 : 주민설명회 개최(2020.10.28)
- 광주광역시 광산구 더하기센터 대강당
- 2021. 05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제출
- 2021.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2021.07.08)
- 2021. : 환경영향평가(예정)
- 2022. : 공사 착공(예정)
- 2027. : 공사 준공(예정)

1.4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
- 도로구분 :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광역시도)
- 규 모 : L=5.94km, B=20.0m(비교 1안 기준)
- 설계속도 : 평지 70km/h
- 승인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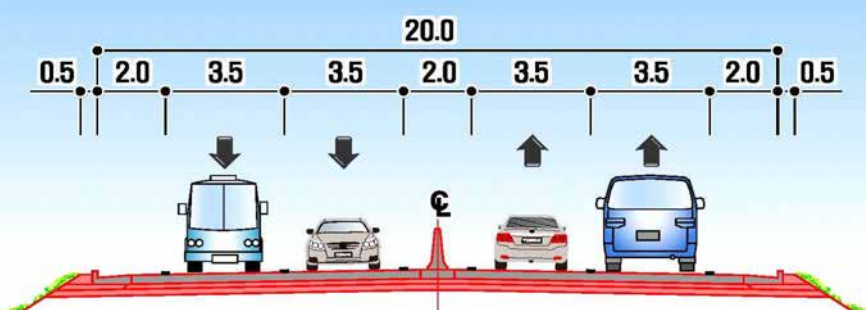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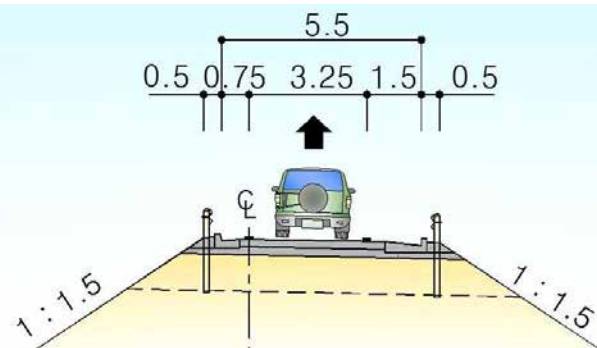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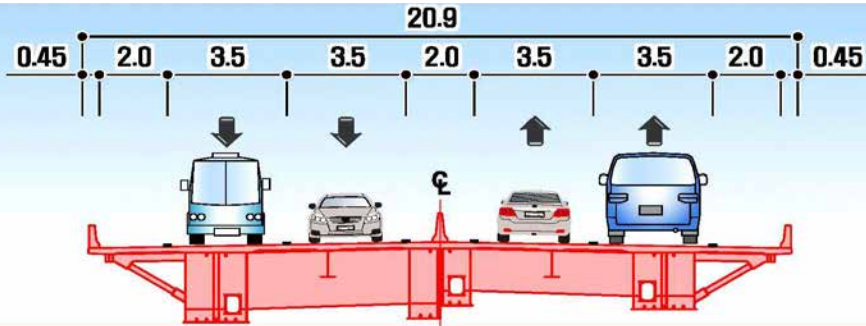
〈표 1.4-1〉 대안별 계획규모

구 분		비교 1안	비교 2안	비교 3안
연 장		5.94km	7.25km	6.54km
폭원		20.0m	20.0m	20.0m
설계속도		70km/h	70km/h	70km/h
토공량	흙깎기	1.9만㎥	1.1만㎥	2.8만㎥
	흙쌓기	71.0만㎥	47.2만㎥	51.3만㎥
	순성토	69.1만㎥	46.1만㎥	48.5만㎥
연약지반		12.1만㎡	15.9만㎡	5.7만㎡
교량		-신설 4개소 / 234m -확장 1개소 / 50m	5개소 / 283m	3개소 / 18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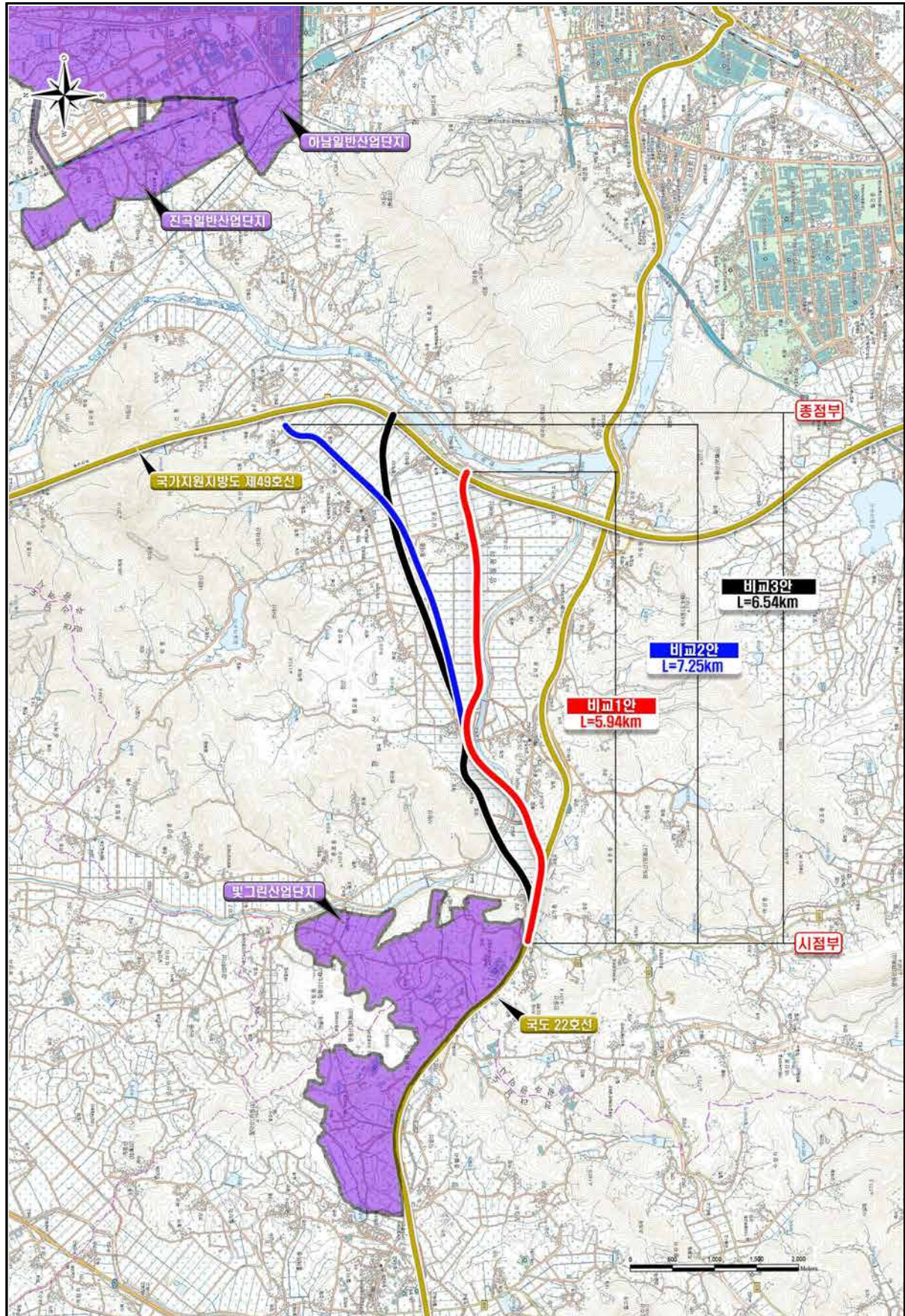
- 기하구조 검토

〈표 1.4-2〉 표준횡단 구성

구 분		단 위	본 선	연결로	비 고
차 로 수		차 로	4차로	한방향 1차로	
도 로 폭 원	총 폭 원	m	20.0	5.50	보호 길어깨 제외
	차 로 폭	m	4@3.5=14.0	3.25	
	중앙분리대	m	2.0	-	
	길 어 깨	m	2@2.0=4.0	오른쪽 : 1.50 왼 쪽 : 0.75	
	측 대	m	2@0.5=1.0	2@0.25=0.5	길어깨폭에 포함
	보호 길어깨/보도	m	2@0.5=1.0	2@0.5=1.0	

토공부	일반 구간	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	총폭원
		4@3.5m=14.0m	2.0m	2@2.0m=4.0m	20.0m
					
	연결로 구간	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	총폭원
3.25m		-	1.50+0.75m=2.25m	5.50m	
					
교량구간	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	방호벽	총폭원
	4@3.5m=14.0m	2.0m	2@2.0m=4.0m	2@0.45m=0.9m	20.9m
					

(그림 1.4-1) 표준횡단면도



(그림 1.4-2) 계획노선 위치도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 본 계획노선 통과지역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후 최종적으로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함

2.1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1) 주민의견 수렴 및 공람내용

(가) 주민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 공고일자 : 2020년 10월 21일
 - 공고번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359호
- 신문공고
 - 일간신문(세계일보), 지역신문(무등일보)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
- 공람기간
 - 공람기간 : 2020년 10월 21일 ~ 2020년 11월 17일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광산구청 건설과,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서면제출

(나) 주민설명회

- 개최일시 : 2020년 10월 28일(수), 14:00
- 개최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더하기센터 대강당

(2) 관계기관 의견수렴

- 의견수렴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359호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주민설명회 개최공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 광산구 본량동 구간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1.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 광산구 본량동
-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내용(비교1안) : 연장(5.8km), 설계속도(70km/hr), 폭원(20.0m, 4차로)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0년 10월 21일 ~ 11월 17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와,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광산구청 건설과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게시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개최일시	장 소
광산구 본량동	2020. 10. 28(수), 14:00	광산구 대하기센터 대강당 (舊 본량중학교)

4. 주민의견 제출기간

- 제출기간 : 공람게시 후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5.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 또는 주민설명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제출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와,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광산구청 건설과,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와(☎ 063-850-9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간지 : 세계일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359호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주민설명회 개최공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 광산구 본량동 구간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 광산구 본량동
-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내용(비교1안) : 연장(5.8km), 설계속도(70km/hr), 폭원(20.0m, 4차로)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0년 10월 21일 ~ 11월 17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와,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광산구청 건설과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게시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개최일시	장 소
광산구 본량동	2020. 10. 28(수), 14:00	광산구 대하기센터 대강당 (舊 본량중학교)

4. 주민의견 제출기간

- 제출기간 : 공람게시 후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5.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 또는 주민설명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제출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와,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광산구청 건설과,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와(☎ 063-850-9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일간지 : 무등일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트맵 > 도광

EIASS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 소개](#)
[사업조치](#)
[협의통계](#)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국민참여

Public participation

- 협의과정현황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평가서 초안 공람**
- 사물지침
- 국차사항

평가서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명	일고면국가산업단지(충주방한 건설공사)국가산업단지(전립도)				
* 건물					
사업위치	지역 : 광주광역시 광안구 남도동 (남도회관길 3번) 종중 : 광주광역시 광안구 신수동 (냉천로중앙 2번 분원동)	소재지	면적	용	연장
담당자명 (담당부서명)	* 문의처 도로교통(제2과제)로 일고면의 계획 및 시설에 관한 협의(제2과제)로 하역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				
사업구분	도로건설 / 도로교 건설공사 / 제철도				
사업규모	* 사업내역 : 육산저농곡도관리청 * 총길이 : 육산저농곡도관리청 * 사업구분 : 5.9km * 사업비 : 790 억원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초안공람

- * (초안)07000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pdf
- * (초안)08000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주민 의견 검토.pdf
- * (초안)09000 제1차의 작성성.pdf
- * (초안)10111 동지출발.pdf
- * (초안)10112 자연문화유산.pdf
- * (초안)10130 지형 및 생태계의 보전(자연지질).pdf
- * (초안)10130 주변 지역(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pdf
- * (초안)10140 수환경의 보전(수질및수리구조).pdf
- * (초안)10211 기상.pdf
- * (초안)10212 대기질.pdf
- * (초안)10213 온실가스.pdf
- * (초안)10214 토양.pdf
- * (초안)10215 소음진동.pdf
- * (초안)10221 환경경제자유화권.pdf
- * (초안)10310 환경친화적 도시개발.pdf
- * (초안)10312 인구 및 주거.pdf
- * (초안)11000 종합평가 및 결론.pdf
- * (초안)12000 부속.pdf
- * (초안)00000 표지 및 목차.pdf
- * (초안)01000 설명문.pdf
- * (초안)02000 개발기반계획의 개요.pdf
- * (초안)03000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pdf
- * (초안)04000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df
- * (초안)05000 지역개발.pdf
- * (초안)06000 환경영향평가합의회 심의내용.pdf

주변 공공시설	2020.10.21	주변공업 지역	2020.10.21 ~ 2020.11.17
공업 장소	육산저농곡도관리청 도로공사,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광주지구 건설과, 삼도읍 행정복지센터, 본청을 합동복지센터		
상행위 일시	2020년 10월 28일(수), 14:00		
상행위 장소	광안구 다목적발전 대강당(본 본청문화회)		
폐쇄시간	2020.10.21 ~ 2020.11.17		
부서명	육산저농곡도관리청 도로공사	전화번호	063-850-9256

[목록](#)

2.2 주민설명회

(1) 개최결과

일 시	장 소	참석자	비 고
2020년 10월 28일(수) 14: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더하기센터 대강당	38명	

주) 주민참석자 : 주민설명회 참석명부에 기재한 주민 기준

(2)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주민설명회 참석 명부			
사 업 명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 광산구 본량동 일원		
설 명 회 일 시	2020. 10. 28 (14:00)	설 명 회 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더하기센터 대강당
사 업 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연 번	성 명	주 소	서 평
1	이		-
2	박		-
3	김		-
4	김		1
5			2
6	이		1
7	김		-
8	김		-
9	김		3
10	김		1
11	김		-
12	김		-
13	김		-
14	김		-
15	김		-
16	김		1

주민설명회 참석 명부

사 업 명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 광산구 본량동 일원		
설 명 회 일 시	2020. 10. 28 (14:00)	설 명 회 장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더하기센터 대강당
사 업 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연 번	성 명	주 소	서 명
	김		
	이		
	김		
	양		
	김		
	김		
	김		
	김		
	김		
	오		
	이		
	하		

(3) 주민설명회 개최사진



3. 의견수렴 결과

3.1 주민설명회

의견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참석주민	○지평교차로~국도 22호선을 확장하는 것은 어떤가?	○국도22호선을 확장 할 경우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용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오히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교통안전이 저하 됨	
	○시점부~오운교차로의 거리는 약 500m이며, 이 부분을 4차로가 아닌 6차로로 확장한다면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지 않는가?	○시점~오운교차로를 6차로 확장시 마을과는 다소 이격되나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용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오히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교통안전이 저하 됨	
	○입석마을과 광주순환고속도로를 건설 중인 도로가 사실상 10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여기에 이번 도로가 신설 된다면 장성에서 내려오는 차량+고속도로 및 빛그린산단 연결도로 이용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우려된다. 터널식 방음벽 등을 통해 주민들을 보호해달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도로 소음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실시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빛그린 산업단지는 자동차 부품을 위한 산업단지이고, 이로 인해 차량 운행이 새벽에도 발생할 것이다. 풍속마을~죽산마을 사이로 차량이 지나갈 때 새벽 시간의 소음진동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선을 아래쪽으로 더 내려서 마을을 우회해야 하지 않는가? 방음벽 설치가 필수적이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도로 소음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실시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1안이 삼도와 본량의 경계이다. 4.5km 지점부터는 10m 이상 올린다고 하는데, 위치상 도로가 독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침수 지역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텐데, 이는 고려했는가?	○실시설계시 침수지역 및 기존 배수로를 상세히 조사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3.2 주민의견서 제출

의견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서○○ (지역주민)	○ 비교1안을 반대합니다. 주민의견은 평림천 독길 이용하여 진입도로를 건설	-	
이○○ (지역주민)	□2차 주민설명회 관련임 1.익산청에서는 비교1안을 사실상 확정안으로 설명 유도하면서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주민을 호도하는데 이는 본량주민 전체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편파적인 행정으로 향후 반발의 단초가 될수 있음 2.비교1안의 문제점 -본량소재지 주변 중앙에 거주하는 본량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은 용진로와 신설도로가 멀리 떨어져서 사용 할 수 없는 도로이며 -서부지역 주민 역시 주생활도로인 본동로, 용진로와 이격되어 서부지역 주민들 또한 신설도로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가중되고 -풍숙, 죽산마을의 경우 인접으로 소음으로 인한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등 -본량지역 전체 주민들의 도로 신설로 인한 생활편익이나 소음, 농지의 손실 및 영농 불편 등 제반사항에 대한 피해만 가중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나 이익은 도외시 한 채 오직 빗그린산단만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유발시키는 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비교1안과 비교2안과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는 것은 익산청의 탁상행정예 불과하며 주민들을 도외시한 것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임 1. 익산청의 비교1안만을 최종안인양 주민 설명회에서 유도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며 비교2안, 추가검토안, 또 다른안의 검토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재수렴할 필요가 있고	○ 도로 이용자 모두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도로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교차로 계획을 수립하겠음 -도로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교차로 계획을 수립하겠음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비교안별 장단점을 검토하여 최적의안을 선정하였음 ○ 남측 국도22호선을 활용하는 대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각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였으며,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음	

의견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이○○ (지역주민)	2. 비교2안의 경우 본량소재지 및 본량 서부지역 사용도로와 인접하거나 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증대되고 풍속, 죽산마을의 소음피해 발생을 해소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연계성 또한 빛그린산단 도로 사용과 진곡산단, 하남공단 연계성 및 장성, 혁신도시 등 연결성에 문제가 적어 비교2안을 심사숙고하여 수정 보완하면 비교1안과 추가검토안 등을 아우르는 안이 최적이 될 것이며, 대안이 없다면 비교2안이 본량소재지 주변 다수의 주민들의 여론임. 3.의견 가.비교1안, 비교2안, 추가검토안은 상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비교1안의 경우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외시하고 빛그린산단 만을 위한 도로로 보이며 나.비교2안은 비교1안의 단점인 본량주민의 생활편익과 소음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되며 비교2안의 재검토 및 보완으로 새로운 적정안을 만들어 본량주민 대다수가 수긍하는 도로의 신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 주민, 도로이용자 모두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추후 실시설계시 노선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 주변 주민 및 도로이용자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였음 ○ 추후 실시설계시 노선으로 인한 소음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의견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정○○ (지역주민)	□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익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개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 28일 참석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비교1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는 바이며, 죽산마을 통장으로서 주민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도로개설에 따른 소음문제 해결 -익산청 비교1안에 따라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 소음문제가 우려됩니다. 방음벽 설치 등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와우교차로 근방 도로 개설 시 저상(높이1.5m)으로 개설 요청 -비교1안 와우교차로 주변 주민 통행 및 차량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저상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도로주변 비닐하우스 피해보상 요청 -추후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분진발생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투광율이 저하되어 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죽산마을 입구(좌우 약1km)배수로 정비 요청 -올 여름 죽산마을 황룡강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침수피해를 겪었습니다. 현재의 배수로가 좁고 얕아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뚝방이 생기게 되므로 더 큰 홍수피해가 예상되오니 배수로 정비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공사 전 주민설명회(공청회)추가요청 -본 공사가 시행되지 전 금번처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이용자 모두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추후 실시설계시 노선으로 인한 소음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제시하겠음 -추후 실시설계시 저상도로 개설방안을 검토하겠음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추후 실시설계시 배수로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토록 하겠음	

-주민의견 제출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사업장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		
사업자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광역시도)		
의견제출자	성명	서 외 29명	생년월일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화번호
			010-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비교 1안 반대합니다. 주민의견은 평림천 독길 이용하여 진입도로를 건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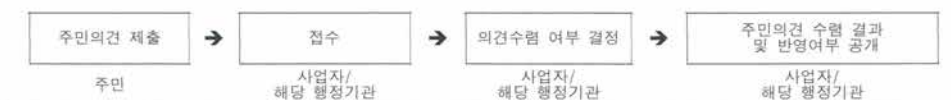
11 월

13일

제출자 서 외 29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사업장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심도동 ~ 광산구 본량동		
사업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의견제출자	성명 이 [서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광주 광산구 [주소] 전화번호 010-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2차 주민설명회 관련 임 1. 익산청에서는 비교 1안을 사실상 확정안으로 설명 유도하면서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주민을 호도하는데 이는 본량주민 전체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편파적인 행정으로 향후 반발의 단초가 될 수 있음. 2. 비교 1안의 문제점 - 본량소재지 주변 중앙에 거주하는 본량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은 용진로와 신설 도로가 멀리 떨어져서 사용 할 수 없는 도로이며 - 서부지역 주민 역시 주생활도로인 본동로, 용진로와 유격되어 서부지역 주민들 또한 신설도로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가중되고 - 풍속, 죽산마을의 경우 인접으로 소음으로 인한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등 - 본량지역 전체 주민들의 도로 신설로 인한 생활편익이나 소음, 농지의 손실 및 영농 불편 등 제반사항에 대한 피해만 가중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나 이익은 도외시 한 채 오직 빛그린산단 만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유발시키는 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 또한 비교1안과 비교2안과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는 것은 익산청의 탁상행정에 불과하며 주민들을 도외시한 것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임.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0], 불필요[]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1. 익산청의 비교 1안만을 최종안인 낭 주민설명회에서 유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비교2안, 추가검토안, 또 다른 안의 검토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 수렴할 필요가 있고 2. 비교2안의 경우 - 본량소재지 및 본량 서부지역 사용도로와 인접하거나 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증대되고 풍속, 죽산마을의 소음피해 발생을 해소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 연계성 또한 빛그린산단 도로 사용과 진곡산단, 하남공단 연계성 및 장성, 혁신도시 등 연결성에 문제가 적어 비교2안을 심사숙고하여 수정 보완하면 비교1안과 추가검토안 등을 아우르는 안이 최적이 될 것이며, 대안이 없다면 비교2안이 본량소재지 주변 다수의 주민들의 여론 임. 3. 의견 가. 비교1안, 비교2안, 추가검토안은 상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비교 1안의 경우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외시하고 빛그린산단 만을 위한 도로로 보이며 나. 비교2안은 비교1안의 단점인 본량주민의 생활편익과 소음으로 인한 집단만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되며 비교2안의 재검토 및 보완으로 새로운 적정안을 만들어 본량주민 대다수가 수긍하는 도로의 신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29 일
제출자 이 [서명] (이동훈) [서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사업장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 광산구 본량동		
사업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의견제출자	성명	정 [REDACTED]	생년월일 [REDACTED]
	주소	광산구 [REDACTED]	전화번호 010-[REDACTED]

[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익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개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 28일 참석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비교1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바이며, 죽산마을 통장으로서 주민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개설에 따른 소음문제 해결

- 익산청 비교1안에 따라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 소음문제가 우려됩니다. 방음벽 설치 등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와우교차로 근방 도로 개설 시, 저상(높이 1.5m)으로 개설 요청

- 비교1안 와우교차로 주변 주민 통행 및 차량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저상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도로주변 비닐하우스 피해 보상 요청

- 추후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분진발생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투광율이 저하되어 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죽산마을 입구(좌우 약 1km) 배수로 정비 요청

- 올 여름 죽산마을은 황룡강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침수피해를 겪었습니다. 현재의 배수로가 좁고 얕아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뚝방이 생기게 되므로 더 큰 홍수피해가 예상되오니 배수로 정비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사 전 주민설명회(공청회) 추가 요청

- 본 공사가 시행되기 전, 금번처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제출자 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3.3 관계기관

가. 영산강유역환경청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I. 계획개요			
	○ 계획명 :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광산구 본량동 ○ 계획내용 : L=5.8km, B=20.0m(비교1안 기준) - 주요 구조물(교량) : 신설 4개소 285m, 확장 1개소 50m ○ 승인기관(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계획기간 : 2020년~2024년		
II. 검토의견			
1. 총괄	○ 동 계획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과 본량동을 연결하는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계획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래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 반영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	
	○ 비교안은 농경지를 관통하고 마을을 단절하므로 계획노선 남측의 국도 22호선을 활용하는 대안을 추가로 선정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한 후 최적안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 반영 ○ 남측의 국도 22호선을 활용하는 대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각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였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및 환경영향평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반영 ○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본 검토의견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각 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 반영 ○ 검토의견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하였음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1. 총괄	○ 동 계획 시행 시 상위·관련계획 내용 등의 반영여부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주요 협의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상위계획과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는 사업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검토한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였음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비교안이 모두 농경지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논 습지와 하천 생태계를 서식지로 이용하는 법정보호종(수달, 원앙, 맹꽁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보전 및 훼손 최소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반영 ○ 법정보호종(수달, 원앙, 맹꽁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보전 및 훼손 최소화 방안은 검토 제시하였음	
	○ 계획노선별 생태적 연결성 단절 및 야생동물 로드킬 출현빈도가 높은 구간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선형 우회, 생태통로(육교형, 터널형 등) 및 유도울타리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반영 ○ 계획노선별 생태적 연결성 단절 및 야생동물 로드킬 출현빈도가 높은 구간을 조사하고 저감시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사업구간 주변으로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돼지풀, 애기수염)이 분포하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분포현황을 확인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제거·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생태계교란식물에 따라 제거방법과 시기가 상이하므로, 「생태계교란생물 현장관리 가이드(환경부·국립생태원, 2017)」 참조	☐ 반영 ○ 생태계교란식물의 분포현황을 확인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제거·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였음	
	2) 수환경의 보전 ○ 비교 1안의 경우 일부 구간이 평립천(지방하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바, 향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천변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된 노선을 계획하여야 함	☐ 부분반영 ○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였음	
	○ 동 지역은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역이므로 사업이 구체화되는 실시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에 대한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최종 배출부하량을 산정·제시하여야 함	☐ 부분반영 ○ 수질오염총량 연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였음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2. 입지의 타당성	○노선별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주변 하천 및 농경지 등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배제 계획 및 비점오염원 저감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가급적 침투측구 등 자연형 저감시설을 우선 고려하고, 적정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시 -하천 횡단 교량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하천구역 밖 또는 둔치부로 유도하여 자연형 저감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제시	☐ 미반영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저감계획은 추후 실시단계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세부 계획을 제시하겠음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금회 제시한 비교안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질 및 소음·진동의 영향을 비교·검토한 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도로 소음 피해 및 민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목표연도까지 연도별/시간대(24시간)별 교통량 및 속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소음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평가	☐ 반영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도로 소음 피해 및 민원 등이 최소화 되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였음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금회 제시한 비교안은 농경지와 마을 사이를 통과함에 따라 생활권 단절 및 접근성 악화 등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생활권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비교1안 중점부(풍숙교차로) 마을간 생활권 단절 최소화 방안 강구·제시	☐ 반영 ○생활권 단절을 최소화한 노선을 검토 제시하였음	
	○농업진흥구역 등의 우량농지가 도로에 편입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고 해당되는 지역은 가급적 배제하는 노선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반영 ○농경지 단절을 최소화하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III.계획의 적정성			
	○주변지역 교통량과 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수요예측을 통해 동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제시하여야 함	☐ 반영 ○주변지역 교통량과 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수요예측을 통해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하였음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Ⅲ.계획의 적정성			
	○비교안은 농경지를 관통하고 마을을 단절하므로 계획노선 남측의 국도 22호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규모 절·성토 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도로 활용하는 방안 우선 검토	☐ 반영 ○국도 22호선을 활용하는 대안을 선정하여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음	
Ⅳ.기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제시한 세부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제시하여야 함	☐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제시하였음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 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정량화 하여야 함 -문헌자료(전국자연환경조사결과, 생태·자연도 등) 및 현황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 비교노선도 현황 최신화 필요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현지조사표(동물상 포함) 및 측정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부록에 첨부) -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	☐ 반영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 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정량화하여 제시하였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본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	☐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적성 제시하였음	

나. 광주광역시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I.계획개요	○계획명 :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광산구 본량동 ○사업규모 : L=5.8km, B=20.0m (비교 1안 기준) <table><tr><td>구분</td><td>연장</td><td>폭원</td><td>설계속도</td><td>순성토</td><td>교량</td></tr><tr><td>비교1안</td><td>5.8km</td><td>20.0m</td><td>70km/h</td><td>42.4만㎡</td><td>신설 4개소/285m 확장 1개소/50m</td></tr></table> ○승인기관(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획기간 : 2020년~2024년	구분	연장	폭원	설계속도	순성토	교량	비교1안	5.8km	20.0m	70km/h	42.4만㎡	신설 4개소/285m 확장 1개소/50m		
구분	연장	폭원	설계속도	순성토	교량										
비교1안	5.8km	20.0m	70km/h	42.4만㎡	신설 4개소/285m 확장 1개소/50m										
II.검토의견															
1.총괄	○본 계획은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며, 본안 작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과 주민·관계부서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여야 함 ○본 사업의 특성상 대상지역의 길이가 길고 입지여건이 다양하며 세부 공사계획은 포함되지 않아 정성·정량적인 검토가 불가능 하므로, 추후 세부 공사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검토에 적용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2차적인 환경상 악영향을 예방하여야 함 ○본 검토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하였으며,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과 주민·관계부서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였음 ☐ 반영 ○추후 세부 공사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반영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시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겠음 ☐ 반영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승인, 신고하겠음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2. 항목별 검토의견	☐ 계획의 적정성 1)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30 광주 도시 기본계획 등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상위 관련계획 외에 국가 및 광주광역시 환경보전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추가 검토하여야 함	☐ 반영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2)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 주민 등이 제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분석과 대안을 설정하여야 함	☐ 반영 ○주민의견을 반영한 적절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였음	
	☐ 입지의 타당성 1)자연환경의 보전 ○사업지구 주변 현지조사시 법정보호종(9종)이 확인되었으며 문헌상으로도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출현하고 있으므로 공사계획 수립 시 법정보호종 출현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법정보호종 발견 시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반영 ○동식물상 법정보호종의 출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지 및 문헌조사에 따른 위치도를 제시하였음	
	○향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거나 대체·복원이 불가능한 우수 생태계는 개발지역에서 회피하여 보전토록 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 사업지 내·외 지역이나 대체지를 활용하여 동일 가치 이상으로 대체·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함.	☐ 미반영 ○향후 최적노선 선정후 정밀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의 서식유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면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도로 개설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는 생태통로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함	☐ 반영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처 단절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2. 항목별 검토의견	○ 계획노선 공사시 대규모절·성토 구간을 최소화하고, 부지정지에 따른 절·성토작업 및 도로의 포장공사 등으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발생되므로, 절·성토사면 안정화대책 우선시행 및 자연적인 식생천이가 가능하도록 주변식생 등을 이용한 자연친화적 복원공법 적용 검토하여야 함 -비탈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변식생을 이용한 자연친화적 공법 적용	☐ 반영 ○ 사면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 부조화 및 조망 차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지반고를 최소화하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동시에 절·성토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인근 하천으로 토사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부분반영 ○ 자연 경관과 조화되는 도로 지반고를 검토하였으며, 절·성토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인근 하천으로 토사유출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비산먼지 발생 및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겠음	
	○ 사업계획지 인근 황룡강에는 섬뜩습지, 장록습지 등이 발달해 있으며, 2018년 국립습지센터의 정밀조사결과 장록습지 등에 멸종위기종(수달, 삿,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사업계획으로 인한 황룡강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반영 ○ 사업시행으로 인한 습지의 영향을 정성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동식물상 법정보호종의 출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지 및 문헌조사에 따른 위치도를 제시하였음	
	2) 생활환경의 안정성 ○ 사업 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동내용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적정장소에 배치하여 동 기준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함.	☐ 반영 ○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 광주광역시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하여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를 한 특정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획수립 하여야 함	☐ 반영 ○ 저공해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음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2. 항목별 검토의견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시 설치되는 지장물은 최소화 하여야 하며, 운영시 인근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시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 이동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야 함 -소음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소음발생저감을 위한 저소음 포장공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함.	☐ 부분반영 ○방음벽 설치로 인한 조류충돌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방음벽 설치 위치에 따른 조류 충돌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영업장이 이설하거나 토지가 사업지구로 편입되어야 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된 토양의 복원·정화처리 등 토양복원대책과 더불어 토양오염원에 의한 토양의 물리적 변화와 지표·지하수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방지대책을 제시토록 하여야 함	☐ 미반영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및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시 전역이 ' 16.9.15일부터 「조명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로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되어 ' 17.1.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므로, 가로등 설치계획의 경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1종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 제2종 :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 제3종 :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 제4종 : 상업, 공업지역	☐ 반영 ○가로등 설치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겠습니다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2. 항목별 검토의견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광주광역시 관내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소음지도(교통소음, 항공기 소음)를 작성하여 관리지역을 지정·고시(2018.12.17.)하였으므로,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음지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 반영 ○ 소음지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소음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음	
	☐ 기타 ○ 수질오염총량관리·비점오염저감 등 수질, 대기 및 폐기물분야 등은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	☐ 반영 ○ 수질오염총량관리 협의를 관련 부서와 진행하였음	
	○ 향후 도로 건설사업 추진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승인기관(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광주광역시(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반영 ○ 추후 사업계획 승인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하여 납부하겠음	

다. 광산구청 건설과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도로관련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계획노선(비교 1안, L=5.8km) 노선으로 계획할 시 풍속(약 75m), 죽산마을(약 90m)을 근접 통과로 인한 마을 진입로 단절, 소음피해 등의 문제로 인한 주민 집단 민원이 예상됨.	☐ 부분반영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입로 단절 및 소음피해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후 제시하겠음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계획노선(비교 1안, L=5.8km)에 대하여 4.0km 구간부터 도로 노선을 평림천에 최대한 인접하게 계획하고 국지도49호선에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 요망.	☐ 반영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노선안을 선정하였음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계획노선(비교 1안, L=5.8km)에 대하여 고성도로 계획할 경우 종점부 국지도 49호선과 연결구간 일대 농지 일조권 침해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높아 계획안 변경 요망.	☐ 미반영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조 영향을 면밀히 검토후 제시하겠음	
	○본선도로와 연결되는 마을 진입로 급경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본선도로로 진입 시 산단도로를 통과하는 고속주행 차량과 충돌위험이 우려되므로, 본선 도로와 연결되는 마을연결로 전 구간에 대하여 경사완화 및 회전반경을 대형 차량기준으로 확보하고 본선도로의 중앙분리대 설치 시 장거리 우회 등 통행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반영 검토 요망.	☐ 반영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노선 설계를 실시하겠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2020. 10. 28.)에서 제시된 주민 민원 사항과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건의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가 공청회 개최 요망.	☐ 미반영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청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하겠음	

라. 광산구청 환경생태과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총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아래의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예측치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 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반영 ○ 공사중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겠음	
협의의견	가. 대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m²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²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 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 반영 ○ 공사 착공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겠음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4항 관련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반영 ○ 관련 기준에 적합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겠음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협의의견	나.악취,소음진동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관련 별표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공사하여야 함.	☐ 반영 ○공사 시행전 특정공사 신고를 진행하겠음	
	○공사기간 중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관련 별표8의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반영 ○공사시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겠음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작업 지양 및 “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요령(환경부)”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반영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다.수질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완충저류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검토 필요	☐ 미반영 ○실시설계시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하겠음	
	○공사 및 운영시 부지내에서 발생된 비점오염물질이 초기 우수로 인하여 인근 수계에 직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미반영 ○실시설계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겠음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라 주변 농경지 등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적정 규모의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반영 ○토사 유출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마. 광산구청 생명농업과

평가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농지관련	○해당 사업부지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규모로 집단화 되어있어 농지로써 보전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며,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해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고 도로개설로 인해 농로단절 등 농업경영에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 됨.	☐ 반영 ○농업경영에 피해가 최소화 되는 최적의 노선안을 선정하였음	